

평창군 축제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8
----------	----

제출연월일 : 2010. 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역축제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발전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제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축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축제 등 지원대상 정의

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 대상 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 보조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

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축제행사비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축제사업계획서를 30일 전에 제출하고 군수는 접수된 계획서를 검토·조정한 후 평창군지역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축제지원계획 결정 ※심의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라. 보조신청 및 정산,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보조사업자는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제출
- 군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발전 방안 강구

마. 축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군수는 지역축제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창군축제위원회를 구성·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처 협의 : 해당없음

라.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10. 3. 17 ~2010. 4. 7(21일간) 실시, 제출된 의견없음

평창군 축제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축제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 법인·단체를 말한다.
3. “지역축제”란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향토문화축제, 관광축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역축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3.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축제

제4조(경비의 지원) 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규정한 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축제행사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축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축제개최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조정한 후 평창군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축제

지원계획을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축제 행사비가 일정규모 이상(3억원 이상)인 경우
2. 신규축제로 지원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보조신청 및 정산, 평가) ① 축제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축제별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축제위원회 구성·운영) 군수는 지역축제의 발전과 통합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23호에 관한 사항”을 “제24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23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지역축제 심의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 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

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